

	보 도 자 료					AB35 THEST
금응위원회	보도	2017. 8. 28(월) 배포시		배포	2017. 8. 28(월)	了. 对象沿军处. 5
	금융위 서민금융과장 하 주 식(02-2100-2610)		담 당 자	홍 상 준 사무관 (02-2100-2612) 박 보 라 사무관 (02-2100-2613)		
책 임 자	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 박 상 춘(02-3145-6770)			당 자	대부업감독팀장 신 동 우(02-3145-6774) P2P대출감독대응반 박 형 근(02-3145-6780)	
	금감원 은행비은행소비자보호국장 의 미 태(02-3145-8260)				대부업검사2팀장 지 태 종(02-3145-8267)	

# 제목: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이 한층 더 강화됩니다.(17.8.29일부터 금융위원 감독 개시)

-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시행 -
  - ▶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에 대해 '17.8.29일부터 금융위에 등록할 의무를 부여하여 금융위·워의 감독근거를 명확화
    - \*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'18.3.2일부터 완전시행
  - o P2P대출을 이용하는 분들은 업체의 **향후 금융위 등록 여부**를 면밀하게 확인하여 **무자격 업체**를 **이용**하지 않도록 **유의**

# 1 추진 배경

- ☐ 'P2P대출'이라는 새로운 영업의 확대<sup>\*</sup>에 따른 이용자 피해 우려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, 전문적인 감독 필요성이 점차 중대
  - \* P2P대출잔액(추정) : ('16.6월) 969억원 → ('16.12월) 3,106억원
- 다만, 現 대부업 법규는 **P2P대출업**과 **통상**의 **대부업**간 구분을 두지 않아 **체계적 감독을 위한 근거**가 **불명확**했던 상황
- □ 이에 따라,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에 대한 금융위의 감독 근거를 명확화한 개정 대부업 법규를 '17.8.29일부터 시행함
  - \* **(16.11월)** 「P2P대출 가이드라인」 제정시 시행령 개정을 통한 금융위 등록·감독 발표 → **(17.2월)** 관련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→ **(17.7월)** 국무회의 의결

### 2 주요 개정 내용

### 1. P2P대출 관련 정비사항

- ①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근거 마련(令 §2의4)
- **P2P업체**(플랫폼)가 대출을 실행하기 위하여 **연계하는 대부업자**를 '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'로 정의하고 금융위 등록 의무 부과
- ⇒ 금융위 등록시 P2P대출에 대한 금융위·원의 직접적 감독 가능
- ※ 현재 모든 P2P대출 시·도 등록을 통해 P2P대출 영업을 영위 하고 있는 대부업체는 약 150여개 수준으로 추정(금감원 추정)
- ② 기존 대부업과 P2P대출업간 겸업 제한(감독규정 §10)
- 기존 대부업과 상이한 P2P대출업의 영업특성과 기존 대부 업자등의 규제우회·신용질서 저해 우려를 감안하여,
- □ P2P대출업과 기존 대부업등간 겸영을 제한하고 각 업태간의 구분을 명확화

#### ※ 참고 : 기존 대부업자의 규제우회·신용질서 저해 가능성

- 기존 대부업자가 자금조달수단으로 P2P대출업을 겸업 → 유사 수신 금지(유사수신법) 및 공모사채 발행 제한\*(은행법) 우회 우려
  - \* 은행법 우회소지를 감안 유권해석을 통해 대부업자의 공모사채 발행을 제한
- ② 기존 대부업자가 대출모집수단으로 P2P대출업을 겸업 → 사실상 P2P플랫폼을 대출 모집 창구로 활용
- ③ 기존 매입채권추심업자가 P2P대출업을 겸업 → P2P 대출업 본연의 취지와 무관하게 NPL매입자금 조달수단으로 P2P를 활용

- ③ **P2P대출을 하는 대부업자에** 대한 총자산한도\* 적용 완화(숙 &4의4)
  - \*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총자산을 자기자본 10배 이내로 운용하여야 함
- **P2P업체**(플랫폼)의 **영업에 종속**되어 있는 **P2P대출의 형태**와 특성 등\*을 고려하여,
- \* P2P플랫폼에서의 매칭된 건에 연결되어 자금제공자에게 대출원금과 이자를 수취할 권리를 양도하므로 대부업자 입장에서 대출채권에서 수익이나 신용위험이 발생하지 않음
  - ② 통상의 대부업과 같이 총자산한도를 적용하는 경우, 건전성 등과 무관 하게 P2P대출영업이 제한되어 불합리
- □ P2P영업에 따라 보유 대출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수취할 권리를 자금제공자에게 매각시, 총자산한도 산정에서 제외
- ※ 대출채권 전부를 자금제공자에게 매각하여야만 자산한도 규제 완화가 적용되도록 하여 규제 우회 가능성을 방지

#### 2. 그밖의 정비 사항

- □ 금융위 등록대부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영업 제한 개선(§2의10)
- **대부업·전기통신사업**간 **겸업금지**\*("16.7.25일 시행)에 따라 **단순한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도 제한**되는 **불합리**\*\*를 **방지**하기 위해,
  - \* 이용자 보호 저해 우려가 있는 전기통신사업, 사행산업 등을 금지(법 §3의5②)
  - \*\* 전기통신사업법령 해석(미래부) 상 단순 홈페이지 운영도 전기통신사업에 포함될 소지
- □ 대부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은 경업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도록 개선\*
  - \* 다만, 전기통신사업 중 문자발송업, VAN영업과 PG영업은 대부업 겸업 허용시 이용자 보호 저해 우려가 있어 개정 법규에서도 계속 겸업을 제한
- □ 이밖에 <sup>●</sup>법정최고금리 관련 법률·시행령 위임체계 정상화, <sup>②</sup>'16.7.25부터 감독대상에 포함된 매입채권추심업자 대상 업무 보고서 서식 확충 등 기타 보완 사항 정비

### 3 향후 유의 사항

- □ (P2P업체) 개정법규에 따른 금융위 등록 의무는 업체의 준비 기가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가을 부여함
- o 이미 P2P대출을 하고 있는 업체는 유예기간 중 자기자본(3억원) 등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(금감원) 등록할 필요
  -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'18.3.2일부터 금융위(금감원) 등록없이 P2P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무자격한 불법 영업이 되므로 유의
- 개정 법규 시행 이후 P2P대출을 하려는 업체는 금융위(금감원) 등록 후 합법적인 영업이 가능함
- □ (이용자) P2P대출에 투자하시거나 P2P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해당업체의 금융위(금감원) 등록 여부를 면밀히 확인 후 이용
- 유예기간('17.8.29~'18.3.1일) 중에는 금감원 "등록 대부업체 통합 조회 시스템\*"을 통해 업체의 금융위 등록 여부를 확인 가능
  - \*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(http://fine.fss.or.kr)에서 [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] 클릭
- 특히, 유예기간이 경과한 '18.3.2일부터는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·무자격업체를 이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
  - \*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P2P대출 연계 대부업체는 금융위·금감원의 검사·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용자의 권리 침해 및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음

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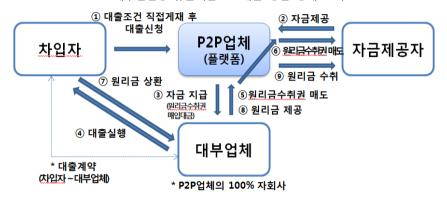


# 참고 1

# 대부업 법규상 규율 대상인 P2P대출 영업형태 예시

□ 인터넷에서 차입자와 자금제공자를 연결하는 **P2P업체(플랫폼)가** 대출실행을 위한 대부업체(통상 100%자회사)를 별도 설립하는 형태

< 대부업법상 규율되는 P2P대출 영업 형태 도식 >



- 차입자는 P2P업체\*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출신청
  - \* 자금제공자와 차입자의 정보를 온라인에서 게재하여 양자를 Matching
- **②** 자금제공자는 차입자가 게재한 조건을 토대로 자금제공 결정
- **❸ P2P업체**는 모집된 자금을 연계되는 대부업체<sup>\*</sup>로 전달
  - \*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
- 4 대부업체 대출 실행
- ⑤~⑥ 대부업체는 대출채권의 원금·이자를 수취할 권리를 자금제공자에게 매도
- \* ③에서부터 ⑥까지의 과정은 동시적으로 진행
- **7~⊙** 차입자 원리금 상환에 따라 자금제공자는 수익 수취
- □ 금번 대부업 법규 개정을 통해 P2P업체와 연계하여 대출을 하는 대부업체에 대한 등록 및 감독 근거를 정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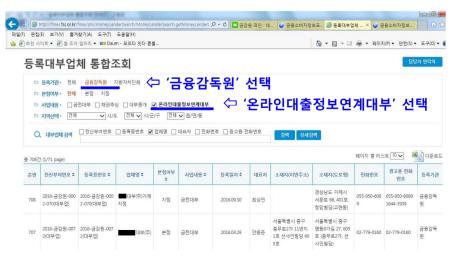
# 참고 2

### 등록 대부업체 통합 조회 접속 방법

● <a href="http://fine.fss.or.kr">http://fine.fss.or.kr</a>(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)로 접속하여 "등록대부업체 통합 조회" 클릭



- ② 통합조회창에 접속 후, 등록기관에는 '금감원'(금융위)란에 체크, 사업내용에는 '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\*'란에 체크한 후 검색
- \*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 등록 조회는 '17.8.29(화)부터 가능하며, 등록 심사 기간 감안 시 9월말~10월초부터 등록 완료 업체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



## 참고 3

### P2P 대출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

- □ (투자한도) 개인 투자자는 연간 1개 P2P업체 기준으로 1천만원, 소득요건<sup>\*</sup> 구비자는 4천만원
  - \* ●이자·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, ❷사업·근로소득이 1억원 초과
- o **법인 투자자와 개인 전문투자자**\*는 상당수준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보유하는 점을 고려하여 **별도의 투자한도 없음** 
  - \* ●금융투자업자에 계좌를 개설한지 1년이 지나고, ❷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으로, ❸소득액 1억원 또는 재산가액 10억원 이상
- □ (영업행위) P2P업체와 자회사인 대부업체(온라인대출정보연계 대부업자)는 P2P대출에 투자자로 참여 금지
  - ※ **(조항 취지)** P2P업체들이 투자자 모집 완료 이전 대출상품을 실행(先대출) 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효과
  - 투자자 모집이 완료되지 않은 채로 대출을 실행시(선대출), 업체가 모집 미완료분만큼 자기자금을 투자한 것이 되므로 가이드라인 위반
  - ② 선대출 후 모집이 결국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, P2P업체는 모집되지 않은 부분만큼 투자한 결과가 되므로 가이드라인 위반 지속
- □ (투자금의 별도 관리) 투자자의 자산을 업체의 자산과 명확히 분리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·신탁(업체횡령 등 방지)
- □ (정보공시) 투자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플랫폼에 게시
- (상품) 차입자의 신용도, 자산·부채 현황, 소득·직장 정보, 연체기록, 대출목적 및 상환계획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
  - \* 법인의 경우 결산재무제표, 담보대출의 경우 감정평가서 등 추가 요구
- (업체) 거래구조, 누적 대출액, 대출잔액, 연체율, 자기자본 등의 정보를 **플랫폼에 게재**